

보도설명자료 (’20. 2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,
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하여 마련 예정
(국민일보, 2.16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포항지진 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'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관련 시행령은 '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
- ◇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,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
- ◇ 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<포항지진특별법, '보상'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'가득'>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침 대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재난 안전교육시설 설치 같은 '구색 맞추기용' 사업들만 담겼다는 비판이 제기됨
- 시행령 제정안의 문제는 피해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'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'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.

* 포항지진특별법 부칙 제1조(시행일)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제14조(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), 제16조(피해자 인정 신청 등) / 특별법 공포일 : '19.12.31.

- 한편,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*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,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포항주민 지원사업 관련 특별법 조항 및 시행령 위임사항

사업	특별법 조항	시행령 위임사항
공동체 회복프로그램	제20조	프로그램의 내용·방법 및 기간 등
포항트라우마센터	제22조	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위탁
재난 예방교육사업	제23조	사업의 종류

※ 문의 :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이재석 팀장(044-203-5895) / 조동후 사무관(5894)